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09
----------	------

제출일자 : 2015.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와 대규모 아파트 건설 및 입주에 따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 대처를 위한 정원 조정으로 차질없는 군정 추진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총 정원 : 778 → 784명 (증 6명)
- 일반직 6명 증원 (7급 +2, 8급 +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군비 1,603,025천원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4. 10. ~ 4. 3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78”을 “784”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765”를 “771”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784	492	13	91	89	99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56	488	13	67	89	99
3급	1	1				
4급	5	4		1		
5급	39	25	3	2	3	6
6급이하 계	711	458	10	64	86	93
연구직 계	2	2				
연구 관						
연구 사	2	2				
지도직 계	24			24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2			22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1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u>778</u> 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765</u> 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u>784</u> ----- -----. 1. ----- <u>771</u>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 별 표 3 】							【 별 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778	488	13	91	89	97	총 계	784	492	13	91	89	99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50	484	13	67	89	97	일반직 계	756	488	13	67	89	99
3급	1	1					3급	1	1				
4급	5	4		1			4급	5	4		1		
5급	39	25	3	2	3	6	5급	39	25	3	2	3	6
6급이하계	705	454	10	64	86	91	6급이하계	711	458	10	64	86	93
연구직 계	2	2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2	2					연구사	2	2				
지도직 계	24			24			지도직 계	24			24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2			22			지도사	22			22		
별정직 계	1	1					별정직 계	1	1				
5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계	1	1					6급상당 이하계	1	1				

소요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 일원화 및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조정

2. 비용 발생 요인

일반직 공무원 증원 : 6명 (7급 +2, 8급 +4)

3. 관련 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7급(16호봉), 8급(8호봉) 기준으로 작성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은 3.8%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1,603,025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1,603,025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균비 1,603,025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5차년도 (2019)	계
세 입		187,844	334,255	346,957	360,142	373,827	1,603,025
지 방 세		187,844	334,255	346,957	360,142	373,827	1,603,025
의존재원							
세 출		187,844	334,255	346,957	360,142	373,827	1,603,025
인 건 비		187,844	334,255	346,957	360,142	373,827	1,603,025
재원 조달		187,844	334,255	346,957	360,142	373,827	1,603,02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 비		187,844	334,255	346,957	360,142	373,827	1,603,025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